

전주지방법원 2020. 10. 14 선고 2020나3645 판결 [계약금 반환청구의 소]

---

### 재판경과

전주지방법원 2020. 10. 14 선고 2020나3645 판결

전주지방법원김제시법원 2020. 4. 20 선고 2019가소2089 판결

### 전문

원고, 항소인A

피고, 피항소인B

변론종결 2020. 9. 9.

판결 선고 2020. 10. 14.

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김제시법원 2020. 4. 20. 선고 2019가소2089 판결

### 주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###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4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

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## 이 유

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**재판장판사나상훈**

**판사오창민**

**판사조지환**